

##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78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4. 2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주 문

○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별첨과 같이 제안한다.

## □ 제안이유

○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연도 예산안심의 등과 연계하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, 이에 따른 집회일시를 조정하고자 함

## □ 주요골자

-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집회하던 것을 7월 7일에 집회하며,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6일에 집회하던 것을 11월 28일에 집회하기로 함(안 제4조)
-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토록 하며,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하도록 함(안 제5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결과 : 해당없음

□ 기타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제4조제1호 중 “6월 21일에”를 “7월 7일에”로 하고, “7월·8월 중에”를 “9월·10월 중에”로 한다.

동조제2호 중 “12월 6일에”를 “11월 28일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”을 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”으로 하며

동조제2항 중 “법 제118조의”를 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<u>6월 21일에</u>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<u>7월·8월중에</u>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2. 제2차 정례회는 <u>12월 6일에</u> 집회한다.</p> <p>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<p>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<u>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	<p>제4조(집회) 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....7월 7일에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9월·10월중에.....</p> <p>.....</p> <p>2.....<u>11월 28일에</u>.....</p> <p>제5조(심의) ①.....<u>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.....<u>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